민인님네ㅜㅋㅋ 표시								
주택 소재지	서울특별시 관악구 신	림동 10-362 저	레 301호					
주택 유형	아파트[] 연립주택	그밖의 주택[]						
민간임대주택 면적 (m')	주거전용면적	주거공용면적	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 (지하주차장 포함한다)		합계			
	약18	0	59	.95	약77.95			
민간입대주택의 종류	공공지원[] ([] 10년 장기일반(기) ([] 10년 그 밖의 유형[	크, [ ] 8년) 크, [√] 8년)	건설[ ] 배입[v]	임대의무 기간 개시일	2019년 06월 20일			
100세대 이상 민간임 대주택단지 해당여부	에[] 아니오[√] * 임대료 증액 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34조의2제1호에 따른 기준 적용							
민간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 • 복리시설의 중류	해당없음							
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	없음[ √ ]	27   <del>1</del>   -	있음[ ] -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의 종류: -설정금액: -설정일자:					
국세 • 지방세 체납사실	없음[√]	9	있음[ ]					
	가입[] 일부가입[]		미가입 [√] - 사유 : [ ]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 (법 제49조제3항) - 사유 : [ ]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 (법 제49조제7항제1호)					
인대보증금 보증가입여부	-보증대상 금액:		(합 제49조제7항제2호) [ ] 공공주택사업자와 입대차계약 체결 (법 제49조제7항제2호) [ ]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(법 제49조제7항제3호) [ ] 보증회사의 가입거절					

\* 주택 면적 산정방법은 「주택법 시행규칙」 제2조,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1조제5항에 따른다. \*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중 그 방의 유형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(3 · 4 · 5년), 중공공임대주택(8 · 10년), 기언형임대주택 중 차나를 저는다

\*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는 제한물권,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\*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대상 금액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에 따른다.

\* 보증가입대상의 미가입 사유에는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보다 적은 경우 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제3항), 가입면제대상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제7항) 및 가입 거절 등의 사유를 적는다.

4. 계약조건

제1조(입대보증금, 월입대료 및 입대차 계약기간) ① 임대사업자는 위 주택의 임대보증금, 월임대료 (이하"임대로"라 한다)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아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.

구 분	임대보증금	월임대류
금 액	금오백만원정(#5,000,000)	급사십삼년 원정(#430,000)
임대차 계약기간	202.2 00 2 = 2	2 <b>기</b> 년 09월 <b>2</b> 일

② 일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

② 심사인는	세18의 미네포이미에	11 1 1 11				1011 -1	-01	15	
계약금	금오십만원정(#500,000) 은 계약 시에 지급하다								
	_		원정(₩	)	은 년	월	에지급		
중도금				,	0 20241	- 28	בות ותוכ	1	
잔 금		금사백오·	십만원정(₩4,500,	000)	은 2024년	09월 23	할에 시티	a -	
계좌빈호	041-21-0605-030	근행	국민은행		예금주		박성례		

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다.

④ 임차인은 제2항의 지급기한까지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(연 %)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.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 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 기관의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